상토혼합기 회전날에 끼임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끼임	사망 1명	20세	실습생

2022. 06.00(월) 00:00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OOO의 비닐하우스에서 피재자가 상토혼합기로 펄라이트와 상토를 혼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상토혼합기 회전날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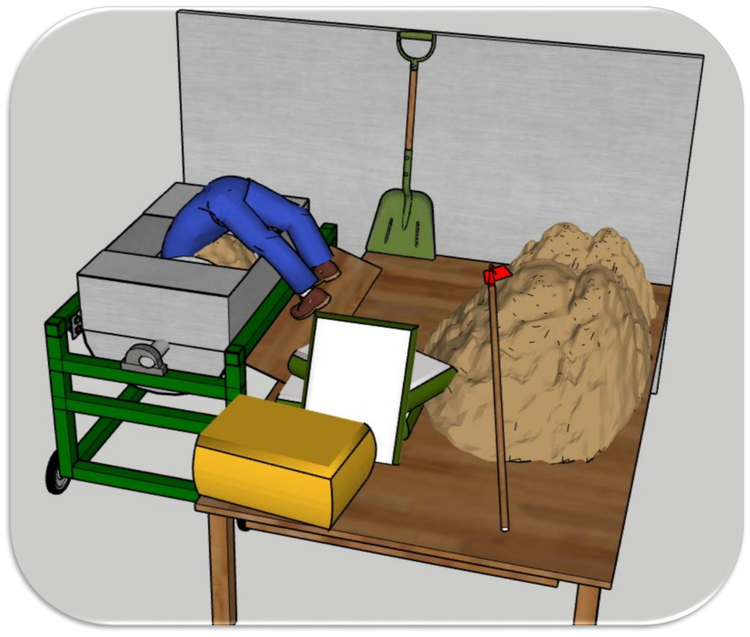

※ 상토 : 모판 바닥에 까는 흙
펄라이트(perlite) : 토양 개량제 또는 배양토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공토양

작업상황

비정상 작업

- (**정상**) 혼합기 등의 기계 운전 시작시 안전한 작업방법, 방호장치 설치 등 필요한 사항 확인 후 작업실시

- (**비정상**) 혼합기의 회전축이 노출된 상태에서 운전시작 전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 실시

발생원인

❶ 직접원인

- (**방호장치 미설치**) 혼합기 회전부 덮개 및 비상정지 스위치 미설치

❷ 기여요인

- (**협정서 미준수**) 실습에 필요한 사고예방 시설 및 그에 따른 조치 미 실행

- (**평가표 형식적 작성**) 사고예방 항목평가의 형식적 작성

- (**교육 미실시**)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

예방대책

❶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실시

- 기계의 회전 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해당 설비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함

❷ 운전 시작 전 조치 철저

- 혼합기 등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방법, 방호장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함

❸ 장기현장 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철저

- 실습에 이용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습하는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을 실습생을 대상으로 정확히 주지시켜야 함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